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

(변경 전)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

(변경 후)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19.9.16.)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 법시행령 (2020.04.01 시행) 개정사항 반영
- 펀드 유형변경: [대출채권] → [대출채권-재간접형]
- 환매주기 변경
- 보수인하

3.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 2020년 5월 22일

4.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변경전	변경후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2. <생략></p> <p>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이 신탁계약에서는 "<u>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u>"을 말한다.</p> <p>4~10.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2. < 현행과동일 ></p> <p>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이 신탁계약에서는 "<u>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재간접형]</u>"을 말한다.</p> <p>4~10. <현행과동일></p>
<p>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u>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u>"이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u>특별자산</u>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p>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u>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재간접형]</u>"이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u>특별자산 (대출채권-재간접형)</u> 3. 개방형 4. 추가형

<p>6. 종류형</p> <p>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해외위탁)</u> <u>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u> (이하 "모투자신탁"이라 한다)</p>	<p>5. 모자형</p> <p>6. 종류형</p> <p>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u> (이하 "모투자신탁"이라 한다)</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u>예탁</u>)</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15. <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투자자계좌부</u>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p> <p>④<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u>전자등록</u>)</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u>」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1~15. <현행과동일></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u>고객계좌부</u>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p> <p>③<삭제></p> <p>④<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현행과동일></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①<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p>	<p>제11조<삭제></p>

<p>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2조<삭제></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p> <p>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p> <p>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현행과 동일></p>
<p>제14조(실질수익자명부)</p> <p>①~④<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에</u>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의</u>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가</u>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p>	<p>제14조(수익자명부)</p> <p>①~④<현행과 동일></p> <p>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에</u>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의</u>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가</u>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의</u> 성명(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p>

<p>자의 성명(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⑧<생략></p>	<p>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삭제></p> <p>⑧<현행과동일></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4. <생략></p> <p>②<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4. <현행과동일></p> <p>②<현행과동일></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p> <p>①<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p> <p>①<현행과 동일></p> <p>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현행과동일></p>
<p>제26조(환매업무)</p> <p>①~③<생략></p> <p>④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⑥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p>	<p>제26조(환매업무)</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삭제></p> <p>⑤<삭제></p> <p>⑥<삭제></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11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12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④<생략></p>	<p>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8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9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④<현행과동일></p>
<p>제28조(환매연기)</p> <p>①~⑥</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u>9영업일전</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u>10영업일전</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p>2. <생략></p>	<p>제28조(환매연기)</p> <p>①~⑥</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u>6영업일전</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u>7영업일전</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p>2. <현행과동일></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③<생략></p> <p>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③<현행과동일></p> <p>④<삭제></p>
<p>제39조(보수)</p> <p>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래스 A 수익증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7.0 	<p>제39조(보수)</p> <p>①~②<현행과동일></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래스 A 수익증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u>3.5</u>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7.0

<p>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0. 클래스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1.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6.1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2.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6.5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3.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1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4.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3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5. 클래스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8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5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4</p> <p>10. 클래스 S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5</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4</u></p> <p>11.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5</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6.1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4</u></p> <p>12.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5</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6.5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4</u></p> <p>13.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5</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1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4</u></p> <p>14.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5</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3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4</u></p> <p>15. 클래스 S-P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5</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8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4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4</u></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u>①~③<생략></u> <u>④ <신설></u></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u>①~③<현행과동일></u> <u>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 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제 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u></p>

	<p><u>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u></p>
<p>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p>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u>소각</u></p> <p>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p>	<p>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p> <p>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p>